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 제24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「동법시행령 제36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세대주 성명	공고사유
1	김*준	2009. 8. 29.	2026. 9. 1.~ 2027. 8. 31.	김*환	폐문부재
2	고*나	2009. 8. 31.	2026. 9. 1.~ 2027. 8. 31.	고*원	폐문부재
3	안*담	2009. 8. 03.	2026. 9. 1.~ 2027. 8. 31.	안*균	폐문부재
4	변*원	2009. 8. 28.	2026. 9. 1.~ 2027. 8. 31.	변*순	폐문부재
5	김*준	2009. 8. 04.	2026. 9. 1.~ 2027. 8. 31.	김*일	폐문부재
6	안*금	2009. 8. 31.	2026. 9. 1.~ 2027. 8. 31.	안*호	폐문부재
7	홍*기	2009. 8. 28.	2026. 9. 1.~ 2027. 8. 31.	홍*협	폐문부재
8	권*소	2009. 8. 06.	2026. 9. 1.~ 2027. 8. 31.	서*순	폐문부재
9	이*윤	2009. 8. 14.	2026. 9. 1.~ 2027. 8. 31.	유*아	폐문부재
10	박*현	2009. 8. 24.	2026. 9. 1.~ 2027. 8. 31.	박*화	폐문부재
11	강*림	2009. 8. 23.	2026. 9. 1.~ 2027. 8. 31.	권*희	폐문부재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임희영 문의전화 : 031-5189-6898)

2026년 9월 2일

남 양 읍 장

